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최봉희 의원 발의】



2025.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68호로 2025년 8월 14일 최봉희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가. 통·반장은 행정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행정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의 비밀 보장이 중요함.

나.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공적 책무의 책임성과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통·반장 비밀유지 의무 조항 신설 (안 제7조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8.14.~2025.8.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반장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록 등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7조의2**에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규정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7조의2(비밀유지)</u>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 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통·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열람·이용하는 공문서 등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통·반장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화하고자 함.
- 최근 우리 구(區)에서는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식지 증부에 따른 효율적 배부를 위해 통·반장에게 선별적 우편함 투입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도 통·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통신비용 지원 근거를 본 조례에 추가하였음.
- 이와 같이 조직 활성화를 위해 통·반장에게 부여되는 임무가 확대되어 가면 필연적으로 직무상 취득하게 되는 다양한 개인 및 행정정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참 고 자 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